

졸업앨범 구매 계약 흐름

1. 구입계획 및 준비

- ① (사업부서) 기본계획 수립 : 졸업앨범 제작 자체사양서(안) 결정
 - 제작(안) : 제작부수, 부당 추정가격, 사양(크기, 면수, 표지종류 등)
- ② 의견수렴 : 가정통신문을 통한 구입 희망 조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교직원, 학생 등)
-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제작 방법, 사양, 가격 적정 여부 등
 - 희망 조사 결과, 학교 제안 사양서 등이 포함된 졸업앨범 구매 계획안에대하여 심의를 받고 제작여부 결정

2. 계약체결

- ① 졸업앨범 제작구매 계약요구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제작사양으로 구매 요구
- ② 계약방법의 결정 : 입찰(G2B입찰),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물품, 수의계약, 조달청 다수공급계약자(MAS) 2단계 경쟁
- ③ 졸업앨범 제작구매 계약의 유의사항
 - 예정가격의 다양한 조사 : 가격의 합리적 결정 유도
 - 자세한 앨범제작사양 제시 : 일정한 품질의 보장
 - 비밀유지보안각서 징구 : 개인정보보호
 - 계약내용에 편집 및 교정 횟수, 일정 등 제작일정을 자세히 포함시킬 것
 - 12월경에 희망자를 다시 조사하여 실제 구매인원으로 변경계약

졸업앨범 구매 계약 흐름

3. 징수 및 수납

- ① 예산편성 여부 확인
- ② 최종 구입희망자 명단 제출 : 사업부서, 10월~12월초 수납요구
- ③ 징수 및 수납
 - 최종 구입희망자 명단에 의하여 징수결정 및 수납

4. 졸업앨범 검수 및 대가지급

- ① 졸업앨범 납품 : 계약내용(수량, 납품일) 이행 확인
- ② 물품검수 : 사업부서
 - 계약내용(제작사양, 부수 등) 확인 후 물품검수조서 제출
- ③ 대가지급
 -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송금

소액수의견적 안내공고를 하여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하나, 동 규정은 입찰방식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수의견적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며,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일정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개찰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인 2순위 업체와 계약체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건을 무효로 하고 새로 견적제출 공고를 해야 하는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 제출안내 공고 후 개찰결과 1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결정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차순위자가 제출한 견적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효처리 되었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 선언 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나, 위 질의의 경우 낙찰선언을 하지 않고 단순히 낙찰예정자로 선언하였다면, 관련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1순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포기한 때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야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 계약포기

구분	1순위자 계약포기	1순위자 부적격자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공고 입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제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자의 입찰이 무효 입찰무효자는 제외하고 2개이상 업체가 투찰하였다면 차순위자 를 심사하여 적격자와 계약
소액수의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 없으면 계약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계약체결 이후 해당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차순위자 순으로 최초계약상대자의 견적을 적용하여 계약가능	

학교물품 구매(추정가격 23,000천원, 낙찰하한율 88%)에 대한 소액수의견적 안내공고결과 1개 업체만이 투찰에 참여하여 2회 유찰되었습니다. 그 후 수기수의계약을 실시하고자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결과 그 중 1업체가 85%로 견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낙찰하한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즉, 낙찰하한율 85%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수기로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낙찰하한율과 관련이 없으며 위 질의와 같이 예정가격대비 85%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한 관급자재 구입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1년인 경우 하자보수보증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8절 2. 품질의 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위 규정으로 조달청에서 제3자단가 공급업체와 계약을 할때 품질보증 1년을 미리 계약해놓기 때문에 수요기관에서 따로 받을필요 없으나, 나라장터 쇼핑몰 계약특기사항에 하자보수기간이 1년 초과되는 물품의 경우 별도 하자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자가 계약내용의 90%를 이행하였으나 나머지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된경우 계약보증금 전부를 귀속시키는지 불이행한 비율만 귀속시키는지 여부

계약 일부 불이행의 경우에도 계약보증금 전부를 국고귀속하여야 함

1)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는 수요물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단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2)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사업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 일반 입찰에 부칠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여부

1)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지방계약법」 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됨

3) 참고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 하여야 하나,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공고 입찰공고문의 낙찰하한율은 86.745%이나 계약담당자가 나라장터시스템에 낙찰하한율을 87.745%로 잘못 입력하여 개찰한 경우

입찰 공고후 관련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찰공고의 내용을 공고기간중에 변경하거나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공고문의 내용대로 입찰결과를 수작업 계산하여 낙찰자를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는게 타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제외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뿐인 경우에 해당 견적서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함

따라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해당 견적서 제출자가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정한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음

재입찰, 재공고입찰

재입찰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시 공고하지 않고 같은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횟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재공고 입찰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때 또는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공고기간은 긴급입찰과 같이 5일로 단축 가능
-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입찰에 부칠때에 정한 가격, 참가자격,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예) 기초금액 70,00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개찰결과 : 예정가격 69,000,000원

낙찰하한선 60,544,050원

사례1) A업체 60,600,000원, B업체 60,200,000원

→ A업체 낙찰

사례2) A업체 60,600,000원, B업체 69,100,000원

→ A업체 낙찰

사례3) A업체 60,600,000원

→ 유찰,재공고

사례4) A업체 60,500,000원, B업체 60,400,000원

→ 재입찰가능

사례5) A업체 69,100,000원, B업체 69,200,000원

→ 재입찰가능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개인과 계약체결 가능한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총액)물품입찰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을 표기한 물량내역서를 게재하여 공고하고 있으나, 품목별 단가가 기재된 가격조사서를 공고문에 게재하여 업체의 산출내역서 작성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액입찰에서 입찰자는 발주기관이 공개한 기초 금액과 물량내역서등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입찰금액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바와같이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자료인 가격조사서를 입찰공고시 공개하는 것은 입찰금액의 변별력이 떨어뜨려 입찰자들의 선의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지역제한시 지사/지점 투찰 허용여부

입찰 : 지점/지사 투찰 불허, 수의견적 : 지점/지사 투찰 허용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1항 6호

6. 추정가격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금액기준에 따른 지역제한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대상과 운영요령 1 -나

4)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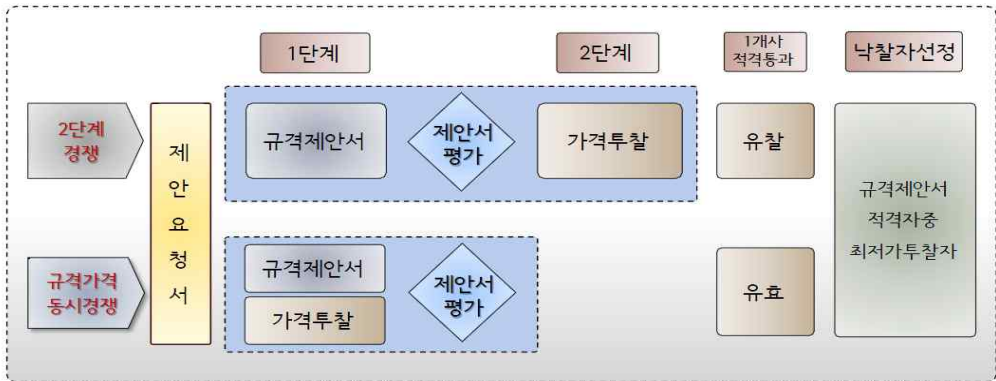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 로 한다.

규격·가격 동시 입찰의 경우, 최초 입찰참가자 4인 중 2인이 규격입찰의 적격자로 선정된 후 1인이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규격입찰 적격자 1인을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규격(기술)입찰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게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르면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규격·가격 동시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여 규격(기술) 입찰 개찰 결과 적격자가 1인일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으며 그 가격입찰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유효한 경우라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제안서 평가를 이용한 계약

2단계경쟁과 규격가격동시경쟁



공사의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이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이행을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통지하여야 하며,

- 계약상대자가 위의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엔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함. 다만, 하자보수 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같은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하자보수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 외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에 직접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전체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한도액 내에서 발주기관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임**

건설업면허 없이 가능한 경미한 시설공사 범위

건설업면허 없이 가능한 경미한 공사

1. 종합공사 : 공사 예정금액 5천만 원 미만인 공사(1건 공사기준)
2. 전문공사 : 공사 예정금액 1천 5백만 원 미만인 공사(단, 가스시설, 철강재설치 및 강구조물, 삭도설치, 승강기설치, 철도·궤도, 난방 공사는 제외)

※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전자입찰서와 전자견적서의 차이는?

■ 서식차이는없음 규정상 전자입찰서를 전자견적서로 간주함

(전자조달법시행령제5조)경쟁입찰에서 제출하는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를 전자입찰로 규정
(전자조달법시행령제6조)전자수의계약에서 제출하는 전자적형태의 견적서를 전자견적서로
규정(1항)

☞ 동제6조2항에 이경우 제5조의 전자입찰서를 전자견적서로 본다라고 명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한계약사무처리요령제22조(수의계약의전자조달시스템이용특례)
(전자공개수의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1항5호에 의한 수의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계약체결하는경우를말함(1항)

* 전자조달시스템이용취지: 계약체결의공정성, 편의성을위해이용

(견적서) 전자공개수의는 입찰방법으로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며, 이때 제출한 입찰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30조1항의견적서로봄(2항)

* 제30조(견적에의한가격결정) 1항: 수의계약時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함